

소방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9,849호

1980년 4월 15일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등) ①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1.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격이 있느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다) 소방직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타 방화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 및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특수 장소로서 수용 인원이 5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화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제 1 호 (가)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기간·과목 기타 강습 및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실비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중 “문발차광막”을 삭제 하며, “대도구용합판” 다음에 “간이칸막이용합판”을 삽입하고, 동조 제 3 항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나의 불꽃을 점하였을 때 용융하는 물품은”을 “용융하는 물품(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나의 불꽃을 점하였을 때 시험물체가 용융하여 구멍이 뚫리는 물품을 말한다)은”으로 하며, 동조 제 5 항중 “방염성능의 표시, 겸사방법”을 “방염성능의 겸사신청, 겸사방법, 표지”로 한다.

① 법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층건축물, 공장, 도서관, 지하가, 극장, 카바레, 맨스홀, 호텔, 병원, 시장, 백화점, 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2. 별표 1의 (6)항 (다)호의 소방대상물 중 맹·농아학교

3. 학교의 사무실, 시험실습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의 범위는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 또는 2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 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에 정한 특수장소 중 다음에 게기한 것.

(가) 3층이상의 공동주택, 호텔, 여관, 여인숙, 기숙사 하숙, 병원, 의원, 조산소 및 사업장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나) 차고로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다) 창고업 또는 별표 2에 게기한 위험물 저장용도에 공하는 창고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게기한 2이상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복합건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면적을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서 규정한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제하여 얻은수의 합계가 1 이상의 것.

③ 법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3일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7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단위 주거전용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인 것.

5. 3층이상의 여관, 여인숙, 하숙으로서 방 30실 이상인 것.

6. 100평방미터 이상의 전문음식점과 200평방미터 이상의 유홍음식점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유홍음식점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제12조 제1항 본문중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와 이와 상당한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제12조 제1항제 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7.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제12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열복, 산소호흡기등 인명구조장구

제14조 본문중 “동표의 (1)항 내지 (15)항에”를 “동표의(1)항 내지 (15)항 및 (18)항에”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1의 (1)항 내지 (15)항 및 (18)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의 것 또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의 것.

제15조 제1항제 1호중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다음에 “과 별표 1의 (3)항에 계기하는 소방대상물로서 33평방 미터 이상의 것”을 삽입하고, 동항 제2호중 “(3)항 내지 (6)항”을 “(4)항 내지 (6)항”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 1호단서중 “증발성액체를”을 “이산화탄소 또는 하로겐화물을”로, “지하층, 무창층.”을 “지하층, 무창층, 지하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 1호중 “별표 1의 (1)항에”을 “별표 1의 (1)항 및 (18)항에”로, 동항 제2호중 “또는 (14)항에”를 “(14)항 또는 (15)항에”로, 동항 제3호중 “별표 1의 (11)항 또는 (15)항에”를 별표 1의 (11)항에”로, 동항 제5호중 “동표의 (1)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0평방 미터 이상, 동표의 (2)항 내지 (10)항, (12)항 또는 (14)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5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11)항 또는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2)항 내지 (10)항, (12)항, (14)항 또는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이 있어서는 15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11)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제17조 내지 제25조”로,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 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종전의 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종전의 제6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6)항에 계기한 것에 있어서는 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다만, 별표 1의 (1)항, (3)항 (가)호, (5)항 (나)호 및 (7)항 내지 (17)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6)항 및 (15)항에 계기한 것에 있어서는 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1의 (18)항 (나)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8.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부분 중 (5)항 (가)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주된 용도에 공하는 부분, 동표의 (1)항 내지 (4)항, (5)항 (나)호, (6)항, (12)항 (나)호 및 (15)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제17조 제2항제 1호중 “제1항제5호에”를 “1항제6호에”로, “제1항제6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그 주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제1항제7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부분에”를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그 주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로 하고, 동항 제2호 가 목중 “제1항제1호 및 제7호에”를 “제1항제1호 및 제8호에”로 하며, 동항 나 목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2, 3미터 이하)를 삭제하며, 동항 제7호중 “스프링크라헤드를 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할 때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고”를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고”로 한다.

제17조 제3항중 “제18조 내지 제21조의”를 “제18조 내지 제23조의”로, “또는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를”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로 한다.

제18조 제1항의 표의 적용소화설비의 각단종 “불연성가

스 소화설비”를 각각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젠크화물 소화설비”로 하고, “증발성액체소화설비”를 삭제하며, 동표의 네째난(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통신기기실에 관한 난) 다음에 다음의 난을 삽입한다.

별표 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발전실, 변전실 및 보이라실로서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젠크화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

제18조제 2항 중 “제 1항에 게기한 별표 3의”를 “제 1항에 게기한 별표 1의 (13)항 (가)호의 소방대상물과 별표 3의”로 한다.

제19조제 1호 중 “불연성가스, 증발성액체”를 “이산화탄소, 하로젠크화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불연성가스,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제 1호 내지 제 5호 중 “불연성가스”를 각각 “이산화탄소”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증발성액체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을 “(하로젠크화물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제 1호 내지 제 3호 중 “증발성액체”를 각각 “하로젠크화물”로, 동조 제 1호 중 “불연성가스”를 “이산화탄소”로, 동조 제 3호 및 제 4호 중 “증발성소화약제”를 “하로젠크화물소화약제”로 한다.

제23조제 1호 중 “불연성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한다.

제24조제 4항 중 “불연성가스 소화설비, 증발성액체 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젠크화물 소화설비”로 한다.

제25조제 5항 제 2호 중 “불연성가스”를 “하로젠크화물”로 하고, 동항 제 3호 중 “불연성가스 소화설비, 증발성액체 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젠크화물 소화설비”로 한다.

제28조제 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2항제 2호 중 “제17조제 1항제 5호”를 “제17조제 1항제 6호”로 한다.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장소에 제 1항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상시 감시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 1항 본문중 “11층 이상의 층”을 “18층 이상의 층”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에 헬리콥터 이착륙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 1항제 3호중 “(7)항 내지 (11)항”을 “(8)항 내지 (11)항”으로 하고, 동항 제 4호 중 “(12)항 및 (15)항”을 “(7)항, (12)항 및 (15)항”으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 (인명구조장구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인명구조장구(방열복 및 산소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5)항 (가)호 중 7층 이상의 관광호텔로서 수용인원인 200이상의 것.

2. 별표 1의 (6)항 (가)호 중 5층이상의 병원으로서 수용인원 200인 이상의 것.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장구의 비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제 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수용인원이 500인이하인 경우에는 방열복 및 산소호흡기 각각 2개를 비치하여야 하고, 50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각각 1개씩을 가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인명구조용장구는 화재시 용이하게 반출·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제 1항 중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의 것”을 “지하층 또는 지하가의 연면적이 700 평방미터 이상의 것”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제 3호 중 “불연성가스 소화설비, 증발성액체 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젠크화물 소화설비”로 하여, 이를 제 3항으로 한다.

제37조제 1호, 제 2호, 제 7호 및 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및 하로젠크화물 소화약제는 제외한다) 및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7. 자동소화기기(유수겸지장치, 압력겸지장치, 음향장치 및 스프링크라헤드, 물분무헤드, 포헤드, 분말헤드, 살수헤드)

10. 결합금속구(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 흡수관용 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판창, 송수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제38조제 1항제 1호, 제 2호 및 제 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10호 중 “불연성가스헤드”를 삭제한다.

1.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및 하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15. 결합금속구(소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 흡수관용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관창, 송수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제3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기구등으로서 그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당해 제품에 대한 기술수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바에 의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의 표중 제3류 난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로 한다.

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6.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제46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점포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5배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제1종판매취급소”라 한다)와 이동탱크에 의하여 위험물을 고정된 저장시설이 설치된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5배 이상 15배 미만의 위험물(별표2의 제4류 제2석유류 및 제3석유류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제2종판매취급소”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하거나 세척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와 바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일반취급소”라 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청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합격증을 교부하고”를 삭제한다.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충수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제24호중 “불연성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한다.

제55조제17호중 “불연성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한다.

제56조 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2의 제2류 위험물중 황린, 황화린, 적린 및 괴상의 유황, 제3류위험물중 생석회, 제4류위험물중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것 또는 제6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는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56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58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간이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62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에서 공인된 제품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안전관리상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준 이상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형식과 제원 및 이용법위에 관하여 따로 고시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제1항제3호중 “불연성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20,000리터 이하(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운행하는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34,000리터 이하)로 하고 그 내부에 4,000리터마다 안전한 칸막이를 두께 3.2미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 제1항제5호중 “용량 12,000리터”를 “용량 20,000로 한다.”

제63조 본문,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중 “판매취급소”를 “제1종판매취급소”로 하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유관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제10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1종 판매취급소(별표2의 제4류 위험물 중석유류를 취급하는 취급소는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 중 제2종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는 제53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다.

2. 제 2 종 판매취급소에 두는 이동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59조제 1항의 규정에 의 한다.
3. 제 2 종 판매취급소에 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량은 저장수량의 15배 미만이어야 한다.
4. 제 2 종 판매취급소의 사무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62조제 1항제 9 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 한다.
5. 이동탱크를 존치장에 존치할 경우에는 동탱크내에 위험물을 저장하여 둘 수 없다.

제69조제 1항제 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조 제 2 항제 1 호중 “불연성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한다. 다만, 별표 2 의 제 2 류 위험물중 유황을 저장하는 경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용기 에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제 3 항중 “소화약제와 기구”를 “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로 한다.

제 7 장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장의 2 . 한국소방안전협회

제81조의 2 (주된 사무소와 지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81조의 3 (정 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 목 적
- 2 . 명 칭
- 3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 사업에 관한 사항
- 5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 6 . 회비에 관한 사항
- 7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9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1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1조의 4 (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 1 . 목 적
- 2 . 명 칭
- 3 . 사무소의 소재지
- 4 . 설립인가의 년 일월
- 5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 자산의 총액

제81조의 5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둈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81조의 6 (임원) ①협회에 회장 1인, 이사10인이내, 감사 2인을 두되, 회장과 이사중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장 및 상임이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81조의 7 (이사회) ①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81조의 8 (전의 및 자문) ①협회는 소방업무에 관하여업 내무부장관에게 전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소방업무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의 9 (감독등) ①내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 감독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의 (2)항 비고난중 “마작집”을 삭제하고, (5)항 (나) 호중 “공동주택”을 “3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며, (15) 항중 “(위의 각항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를 “(위의 각 항에 열거된 것 및 축사등은 제외한다)”로 하고, (18)항의 현행 규정을 “가”호로 하며, 동항에 “나”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하가

[별표 5]의 소화기구난과 [별표 6]의 소화설비의 구분난의 제 3종, 제 4종 및 제 5종난중 “불연성가스”를 각각 “이산화탄소”로 “증발성액체”를 각각 “하로겐화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 1항의 개정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받아 설치된 옥내탱크 저장소로서 단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것은 이 영 제56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당시의 기존건축물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6조제 1항제 2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2. 제17조제 1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18)항 (나)

호의 건축물 및 동조동항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15)항의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크라설치기준과 동조동항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5)항 “가”호의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크라설치기준

3. 제1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실, 변전실 및 보이라실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기준

4. 제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살수설비설치 기준중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 설치기준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위험물취급소중 판매취급소는 이 영 제46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제 1종 판매취급소로 본다.

알 릴

회원 작품 기고는 다음 요령에 의해 원고를 작성 투고 바랍니다.

작성요령

1. 도면작성은 트레싱 paper나, 켄트지에 inking할 것.
2. 축척표기는 도표로하여 축소,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것.
(例 0 1 2 3)
3. 1층 평면도와 배치도를 겹하는 것은 가급적 피할 것.

1. 도면작성 가) 평면도 ($\frac{1}{100}, \frac{1}{200}$)

나) 단면도 ($\frac{1}{100}$)

다) 배치도 ($\frac{1}{200}, \frac{1}{300}, \frac{1}{600}$)

라) 주요부분 상세도 ($\frac{1}{30}, \frac{1}{60}$) (必要時)

2. 설계개요서 : 일반적 기술보다는 계획과정과 계획개념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하기 바랍니다. 200자 원고지 × 3 ~ 5 매

3. 사진 : 가) 전경사진

나) 내장사진

다) 부분사진 (Detail Design 에 주안점을 줄것.)

라) 설계자사진 (명함판 사이즈로 프로필이나 가능한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음).